##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3. 26.(목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
허원제 부위원장

김재홍 상임위원

이기주 상임위원
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[]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o 제1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5 회의공개 여부 결정

o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#### 6 의결사항

- 가. SK텔레콤㈜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5-12-050~051)
- o '15.1.1~1.30일 기간 중 SK텔레콤㈜와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방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 - SK텔레콤㈜와 관련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,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·방해하는 등의 위법사실이확인되어 ▲ SK텔레콤㈜에 시정명령과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,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, ▲ 조사방해 과태료 각 500만원, ▲ 31개 유통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▲ 조사방해 관련 3개 유통점과 2개 대리점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
  - ※ 신규모집금지 시기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함

#### 나.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5-12-052)

- o '14.10.1. ~ '15.2.17. 기간 중 29개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과다 지급 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박노익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 -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고,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· 방해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29개 유통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~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# 다. ㈜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5-12-053)

- o ㈜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- 스크린자막을 통한 시청 제한, 일방적 방송서비스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된 ㈜KT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라 업무처리 개선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1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- ※ 원안 중 과징금의 '추가적 조정' 부분을 '20% 감경'에서 '30% 감경'으로 수정하여 의결함

#### 7 보고사항

## 가. 유료방송사업 (재)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
o 유료방송사업 (재)허가 등 사전동의 절차 개선 방안 및 '15년도 재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## 8 기타

## 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회의는 4월 3일(금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# 6. 폐 회 (18:37)